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검진결과서 등의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9. 타 공공기관 채용 시 부정합격하여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전지역인재의 개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 응시자 기준**

- 1) 재단이 이전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방대학을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 2) 재단이 이전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

□ **이전지역학교**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분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 제3사관학교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제외**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 이전지역인재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기타 이전 지역인재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20.06.01.”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지침」)에 의함.

**별첨3****필기전형 평가요소 및 출제 범위****□ 직업기초능력 평가(50점) + 직무지식 평가(50점)**

※ 각 평가점수 합계 40점 미만 득점 시 합격 하한선 미달로 “과락” 처리

**1. 직업기초능력평가**

구분	문항수	출제 범위	시간
공통	50문항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 조직이해능력	60분

**2. 직무지식평가** ※ 채용분야(행정·전산) 내 전공 선택 없이 통합출제

구분	출제 범위		배점	시간
행정 (50)	경영	경영학원론, 경영통계,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회계원리	50문항	50분
	행정	행정학개론, 정책학원론, 인사행정, 노동행정, 재무행정		
	법학	헌법, 민법(민법총칙, 물권, 채권), 노동법, 행정법총론, 교육법규(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전산 (50)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25문항	50분
	정보보안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정보보안 일반,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25문항	

※ 대학(학사) 전공별 개론 수준 또는 ‘기사’ 자격시험 수준의 과목 및 난이도로 출제

**별첨4****채용 서류 반환[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첨5****채용비위 피해자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1단계] 이의 신청 및 처리**

- ① 채용비위 피해자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별첨6] 양식)를 작성하여 재단 채용 담당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 ③ 감사부서는 이의신청 사안에 대하여 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 ④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⑤ 이사장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평가 관련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2단계] 피해자 구제**

○ 채용비위 피해자는 다음 표에 따라 처리한다.

구 분	피해발생 단계	처리방법
① 피해자 특정 가능 : 직접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의 바로 다음단계 채용시 기회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1차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최종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1차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② 피해자 특정 불가능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피해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최종 면접심사 재실시
	1차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1차 면접심사 재실시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심사 재실시

※ 채용비위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별첨6****채용 이의 신청서**

2024년 1차 직원 채용 이의 신청서			
성명		지원 분야	예) 정규직 일반행정 분야
연락처		e-mail	
이의 신청 내용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고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 2024년 1차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해당 채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24. . .			
이의신청인		(서명)	

## ※ 신청 시 유의사항

- 조사를 위해 이의 제기사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하시고, 조사 결과는 신청서 상의 e-mail 또는 연락처로 통보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